

“상생의 길로! 더불어 잘사는!” 더불어민주당 주요 법안 처리 성과

- ① 일명 ‘노동이사제법’으로, 공공기관 이사회의 인적구성 다양화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비상임이사에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중 추천한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한 ‘공공기관운영법’
- ② 당론법안의 하나로,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연대협력모델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특화단지 육성의 인·허가, 운영 지원, 특화단지 입주비용 지원, 부담금 감면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③ 공무원·교원 등을 제외하고 16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정당가입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정당법’
- ④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생명, 신체를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정상참작 하여 형사책임을 감경·면책하도록 한 ‘경찰관직무집행법’
- 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대상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 교부를 의무화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제392-2차)에서 ‘상생의 길로! 더불어 잘사는!’ 우리당 주력 법안 8건을 포함한 총 46 건의 법안을 처리했음.

□ 12월 국회가 이어지는 것이지만 올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새로운 출발’에 어울리는 ‘정당법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함. 지난해 선거 출마 가능 연령이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후속적으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아지게 된 것임. 이를 계기로 정치권도 일신하고 쇄신하여 16세 당원에 부끄럽지 않은 정의로운 정치생태계 조정에 함께 나서주기를 바랍.

-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첨단산업의 기술력이 국가의 미래 경제와 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부상한 현실에 따라 **당론법안**으로 추진되었음. 당면한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으로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지위를 선점하고 ‘기술주권’을 확립하는데 기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함.
- 지난 2016년 서울시 조례를 통해 처음 도입되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공공기관운영법(노동이사제)**’의 통과를 환영함. 근로자대표는 당당히 이사회에 참석하여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견인하고, 투명성 강화에 힘써주시기 바랍. 우리 민주당은 노사정이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 12월 임시국회는 마무리 되지만 이제 추경을 위한 2월 국회를 준비해야 할 때임.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점차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설 연휴 기간의 재확산이 우려와 함께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본격화되며 거리두기 강화 지침 연장 가능성 등 추경요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협조가 결코 ‘손실’로 돌아가는 일 없도록 ‘정당한 보상’을 위한 추경 협의를 신속하게 시작할 것을 야당에 요청 드림.

2022. 1. 11.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완주

번호	법안명	주요내용	비고
① 노동존중 동반성장 입법			
1	공공기관운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이사회 인적구성 다양화·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등이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함 (노동이사제 도입) 	
② 혁신창업국가를 위한 법안 등 경제살리기 입법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협력모델에 관한 정의 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 인·허가,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와 대한 비용·금융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민원업무의 신속 처리에 대한 특례 규정 	당론법안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간 상호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초광역 권의 개념 신설 및 정책 마련 * △現 기초생활권 조항 존치, 초광역권 정의 신설 △초광역발전계획 수립,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근거 마련 	
③ 사회안전망 강화 법안			
4	건축물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체공사 감리자 업무수행도 제고, 현장관리·감독 강화, 처벌기준 강화 등 	
5	경찰관 직무집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발생한 형사책임 면책 * 생명, 신체를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정상참작하여 형사책임 감경·면제 	
④ 미래정치 개혁법안			
6	정당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선거권이 없는 자 등 「정당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16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정당에 가입할 수 있음. 다만, 18세 미만의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음 	

7	공직선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국민 수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 재외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매 3만 명마다 추가 재외투표소를 또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설치상한은 3개소로 하는 등 설치요건과 상한을 완화함 ○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소의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읍·면·동 수가 감소한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소 이전의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 수 등을 산정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중계 방송할 수 있는 범위에 종합편성채널을 추가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	---

⑤ 주요 민생법안

8	형사소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대상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 교부 의무화 ○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함
---	-------	--